공 사 설 명 서

- 서울역사박물관 팬코일 유닛 및 커버 교체공사 -

2026. 10.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공 사 설 명 서

※ 본 공사 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임을 유념하시기 바람.

1. 공 사 명 : 서울역사박물관 팬코일 유닛 및 커버 교체공사

2. 공사목적 : 서울역사박물관의 노후화된 팬코일 유닛 및 커버를 교체하여 박물관의 냉난방 성능을 개선하고 괘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4. 공사개요

가. 건 물 명 : 서울역사박물관

나. 건물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21,051.58㎡(준공년도 : 1998년)

다. 공사범위 : 팬코일 유닛 125대 교체, 커버 139개 제작·교체

라. 공사내용

1)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실, 복도 등 팬코일 유닛 교체(철거·설치), 커버 제작 및 교체(철거·설치) 등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6. 하자담보책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

<주의>

※ 아래에 기재 되어있는 당해 공사의 특수 및 일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본 공사는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시간과 직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공사일정 및 방법 등 발주처와 협의하고 의견이 있을 시 이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반영토록 하여야 함.
2) 자재 선정, 색깔 선정, 디자인 선정 협의 등 모든 자재나 검수는 발주처와 공사 전 협의 진행
3) 서울역사박물관은 관람객 및 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 완료 후 건축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 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9)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0)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 한다. 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야하며, 지수조정률에 대한 검토 용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CP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 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4)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15)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6)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18) 도급자는 작업장이 업무로 인해 주중에 사무실을 비울 수 없는 곳은 주말 및 휴일공사를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공사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9)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 철거공사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하여야 한다.
-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0)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